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0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1월 11일
발 의 자 :이은주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호진, 성중기, 송도호,
송아량, 우형찬, 이광호,
이승미, 정지권, 정진철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택시 내 위생,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.
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택시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 (안 제 5조 제5항)
- 나.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·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(안 제6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, 철도안전법, 도시철도법,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택시 내의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2.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
4.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택시 내의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</u> 2. <u>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</u> 3. <u>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</u> 4. <u>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</u>

제6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.

② (생 략)

<신 설>

제6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
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
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